

「2024년 광주지역 성장사다리 지원사업」

수요-공급 협업지원 참여기업 모집 연장 공고

2024년도 중소벤처기업부와 광주광역시가 지원하는 지역기업 성장사다리 지원사업 수행자로 지정된 (재)광주테크노파크에서 “수요-공급 협업지원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광주지역 중소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4. 09. 00.

(재)광주테크노파크원장

1 사업개요

- 가. 사업명: 2024년 광주지역 성장사다리 지원사업(수요-공급 협업지원)
- 나. 사업기간: 2024. 01. ~ 2024. 12.
- 다. 주무부처: 중소벤처기업부, 광주광역시
- 라. 수행기관: (재)광주테크노파크(기업지원본부 투자성장팀)

2 추가모집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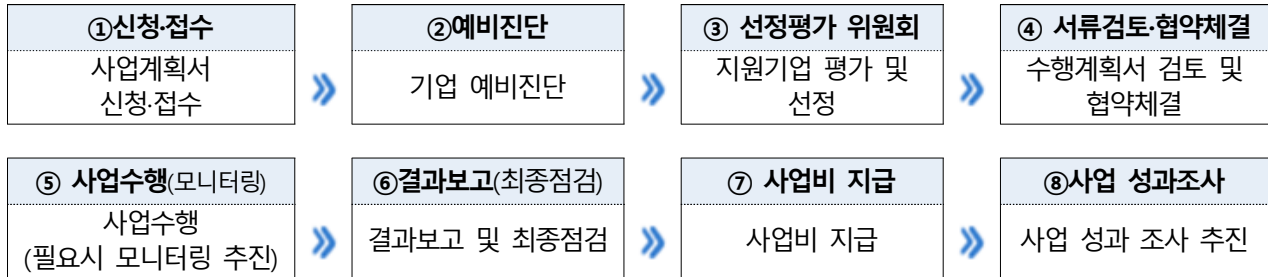
- 가. 지원규모: 총 25,000천원(기업당 5,000천원)
- 나.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설립 2년 이상 및 매출액 3억 이상 기업
 - 광주 내 소재(공장, 지사 등 포함) 중소기업으로 지역주력산업 전·후방 연관기업 중 지원조건 해당 기업 등
 - ① 「지역중소기업법」상의 지역중소기업
 - ② 광주지역 주력산업 : 모빌리티 의장·전장부품, 스마트홈부품, 생체의료 소재·부품

다. 지원내용 및 프로그램

지원유형	프로그램	지원내용
PRE R&D	R&D 기획 및 발굴 지원	· 개발 제품에 대한 R&D 과제 기획 및 아이템 발굴 지원

※ 기업부담금은 기업지원비의 10% 이상 산정, 부가세는 기업 별도 부담

라. 지원절차



3 평가 및 제출방법

가. 평가기준

항목	지표	배점
지원 필요성 (40)	○ 본 지원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의 명확성	20
	○ 사전 추진노력의 우수성(사업수행 준비 정도)	10
	○ 지원대상제품의 사양, 현 진행상황, 애로사항, 시의성 등 지원의 필요성	10
지원내용의 타당성 (30)	○ 지원내용, 범위, 일정의 구체성	10
	○ 지원금액의 적정성 및 사업 목표 달성 가능성	20
기대효과 (30)	○ 지원제품의 사업화 가능성과 결과물 활용의 연계성	20
	○ 고용 및 매출 증대 등 성장효과	10
가점(최대 3점)	○ 우대가점 해당시	(3)

나. 평가방법

- 신청기업의 참여제한 등에 대한 사전검토(예비진단) → 현장실태조사(필요시) → 선정평가 → 결과통보

- ① (예비진단) 신청서류 등 확인을 통하여 기업 참여의 적정성 및 사업의 중복성 등 검토
- ② (운영·실무위원회) 예비진단 결과를 토대로 기업이 신청 프로그램에 대한 적정성 검토
 - * 위원회 적정성 검토시 지원 프로그램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업 개별 연락 예정
- ③ (선정평가) 관련 분야 전문가 위촉을 통한 선정평가위원회 개최
 - * 단, 동일 점수일 경우 '성과 창출가능성'이 높은 과제 우선 선정
 - ** 평가 결과 지원프로그램 및 지원금은 조정될 수 있음

다. 우대가점[아래 항목 해당 시, 우대가점 반영(최대 3점)]

구분	우대가점 기준	증빙서류	가점
1	최근 3년 이내 지역특화 R&D 종료(성공*)기업 (* 최종평가 결과가 우수, 보통일 경우 성공)	최종평가확인서 (SMTECH)	3
2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우수 활용기업	인증서 (유효기간에 한함)	1
3	중소기업중앙회가 선정한 명문장수기업	인증서 (유효기간에 한함)	2
4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인증된 “원산지인증수출자”인 경우	인증서 (유효기간 인증서에 한함)	1
5	지역중소기업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기징후 단계 “주의심각”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	TP 확인	2
6	'24년 지역혁신공모사업 선정된 기초지자체 소재 기업(광주 동구)	TP 확인	1
7	지역 내 공급기관(업) 컨소시엄 구성한 기업 * 공급기관(업)을 활용한 간접지원 형태 프로그램 한정	사업자등록증	1
8	최근 3년 이내 주력 비R&D 지원사업 수혜이력이 없는 기업 - 대상 신규기업: RIPS 기준 2021년 이후 수혜이력이 없는 기업	-	1

라. 제출방법 및 서류

1) 제출방법: 접수기간 내 기업지원사업 관리시스템(RCM) 신청

- (신청 · 접수처) <http://www.smtech.go.kr/region/rms>

2) 제출서류

구 분	서류 목록
공통 제출 서류	☐ 수혜기업 지원 신청서 1부. ☐ 프로그램별 상세사업계획서 1부 ☐ 기업부담금 출자확약서 1부 ☐ 개인(기업)정보 이용 동의 및 자료제공 확약서 1부 ☐ 중복지원 금지사항 확약서 1부 ☐ 신청자격 확인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국세 및 지방세 납부증명서 각 1부. ☐ 재무제표('21~'23년) 각 1부. * 창업 3년 미만인 기업은 해당 연도만 제출 * 결산완료가 되지 않은 기업은 가결산 자료 인정(회계법인 발행) ☐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명부('21년~'23년) 각 1부. * 창업 3년 미만은 기업은 해당 연도만 제출 ** https://total.comwel.or.kr 에서 발급 가능, 기간은 해당 연도 1/1~12/31 ☐ 예비진단 목적 기업현황 조사서(엑셀서식) 1부 ☐ 우대가점 증빙서류 1부. (해당시)

4 기타사항

가.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평가결과는 신청기업에 개별통보)
- 선정평가위원회 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지원금액 및 지원기간 등 주요내용은 조정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가 허위인 경우, 선정취소 및 협약해지 될 수 있음
- 선정평가 우대가점에 따라 가점을 적용하되, 최대 3점까지 인정
- 과제 종료 후, 선정기업은 주관기관의 사업성과 활용을 위한 제반 자료 요청 시 적극 협조해야 함
- 부가세는 지원하지 않으므로 기업이 부담하여야 하며, 지원금액과 기업부담금을 합한 총 사업비는 부가세가 제외된 금액임
- 신청서 접수 후 과제별 주관기관에서 면담/현장실태조사 또는 별도 서면자료 등 추가 보완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정부 및 유관기관과 동일 또는 유사사업 중복지원 불가
 - ① 중복수급 등 부정행위 적발 시 해당 지원과제의 지원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을 부과 할 수 있으며, 지역주력산업육성 등 정부지원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② 중복지원을 한 경우 선정평가에서 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 또는 선정 이후라도 지원 기업 협약해약 처리가 될 수 있으므로 유의

나. 지원제외 대상

- 신청기간 내 기업지원사업 관리시스템(RMS)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 지원기간 중 신청지역 이외 지역으로 본사 또는 사업장이 이전한 경우
- 공급기업이 선정기업과 동일 대표자 또는 자회사인 경우
- 동일제품 또는 내용으로 정부 및 지방비 지원을 받거나 진행 중인 경우(중복지원)
- 기업의 부도, 휴폐업, 국세(지방세)체납처분*, 채무불이행자*, 파산·회생기업**, 자본전액잠식***, 부채비율 1,000% 이상***, 국가R&D 참여제한기업 및 대표자 등((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별표1] 참고)

구분	신청제외 대상
1	기업의 부도(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2	기업이 휴·폐업 상태인 경우
3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았거나,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과대료, 관세, 산재·고용보험, 임금체불 등의 체납관련 정보가 등록된 경우 * 단, ①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 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 ②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③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④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예외
4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등의 정보가 등록된 경우 * 단, ① 과제선정을 확정하는 평가 시행일 이전 채무불이행 사유를 해소한 경우, ②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③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④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예외
5	파산·회생절차·개인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
6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7	신청기업, 대표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조사업 수행 대상 배제 또는 교부 제한 중에 있는 경우 * 관련규정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동법 시행령 제13조의3(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의 기준, 방법 및 절차)
8	의무사항(보고서/성과실적 제출, 정산금/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거나, 각종 법령 위반(사업비 목적 외 사용 등)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정부지원사업, 지역산업육성사업 등에서 제재 중인 기업

- ❶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예외
- ❷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 ❸ 단, 잠재기업지원사업의 투자트랙-상장지원 프로그램의 특례상장 신청기업은 예외

5 문의처

가. 문 의 처: (재)광주테크노파크 투자성장팀 김경현 선임(062-602-7212)

나. 접수기간: 공고일로부터 ~ '24. 09. 12.(목), 14:00限

다. RMS 문의처

구분	담당기관	연락처
SMTECH 회원가입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공급기업 등록문의		
시스템 오류문의	RMS 소통게시판(SMTECH 회원가입 오류, 공급기업 등록 오류 제외)	

붙임 1. 기타 유의사항

2. R&D 기획 사업비 산정 기준

[붙임 1] 기타 유의사항

- ☐ (지원금 산출) 기업지원금의 10% 이상 기업부담금 매칭 * 부가세 별도 기업부담
- ☐ (의무 참석) 중간점검·성과교류회 선정기업 의무참석
- ☐ (최종 결과물) R&D 과제 기획보고서
- ☐ (세부 산출 방법)
 1. 총 신청가능금액 5,000천원 내 예산 산정
 2. 기업부담금의 경우 전문도서 구입비(R&D과제 연계) 및 기타 회의비 및 규정을 준수한 금액만 인정되며, 최소 기업부담금 금액의 10%이상 매칭 필요

3-1. 예시 1

세 부 산 출 내 역		금 액 (천원)	비 고
컨설팅비 (지원금액)	250천원×4명×5회	5,000	300천원 ×10회
컨설팅비 (기업부담금)	250천원×2명×1회	500	기업부담금 10%
합 계		5,500	

3-2. 예시 2

투자패키지 프로그램 내 선택 사항		금 액 (천원)	비 고
컨설팅비 (지원금액)	250천원×4명×5회	5,000	300천원 ×10회
연구추진비	실비 사후증빙	500	기업부담금 10%
합 계		5,500	

[붙임 2] R&D 기획 사업비 산정 기준

□ 비목별 기준

- 비목별 사업비 산정은 아래의 [표] 비목별 기준표를 따름

[표] 비목별 기준표

비목	세목	단가	필수 구비서류	근거
연구 활동비	회의참석수당 인쇄 및 도서구입비	· 1일 3시간 이상 ~4시간 기준 최대 30만원 지급 * 타 사도 위원 참석시 최대 100천원 추가 지급 가능	· 위촉동의서 및 서명록 · 회의결과보고서(사진필) · 수당집행내역서 · 외부위원의 경우 여비 ·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 견본 또는 검수 사진	광주테크노파크 내부규정 "수당 등 지급규칙" 준용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연구과제 추진비	국내출장비	· 여비규정 단가	· 출장결과보고서 · 증빙영수증	기업 내 규정 별도 없을 시 광주테크노파크 내부규정
	회의비 (다과,식비)	· 식비 1인당 30천원 이내 (다과비 포함) · 다과비는 1인당 5천원 이내	· 서명록 · 회의사진 · 회의결과보고서 · 증빙영수증	광주테크노파크 내부규정

※ 비목 및 세목별 내용은 아래의 '참고. 비목별 내용' 참조

※ 회의비의 경우 일반음식점만 활용 가능, 주류 등 비목등 불인정

※ 참고. 비목별 내용

비목	세목	내용
연구 활동비	회의 참석수당	· 기획연구 수행을 위하여 외부위원 에 대한 회의참석 사례비 및 안건 검토 비용을 계상 * 타 사도 위원 참석시 최대 100천원 추가 지급 가능 ※ 주관기관 수당지급 불가 (참여기관은 컨소시엄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만 해석)
	외부위원 여비	· 관외 위원에의 경우 교통비 및 숙박비를 계상(실비의 범위 내) ※ 출장자 계좌 송금 원칙
	인쇄 및 도서구입비	· 기획연구 수행에 필요한 각종 인쇄복사 및 문헌구입을 위한 비용을 계상 ※ 기업부담금 및 지원금의 10% 이내 준용
연구과제 추진비	국내출장비	· 기획연구 수행을 위한 국내(관내,관외) 여비 지급을 위한 비용 계상 ※ 출장자 계좌 송금 원칙
	회의비 (다과,식비)	· 기획연구 수행을 위한 회의의 다과 및 식사비용을 계상 ※ 주관기관 임직원간의 회의비 집행 불가 (반드시 외부인이 참석해야함)

□ 시간 산출 지급 기준

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

1. 시간산출 및 지급기준

가. 수당 지급기준(1인당)

- 제3조 1,2호에 해당하는 위원회

지 급 기 준		
구분	상한액	비고
2시간 이하	20만원	해당 기준금액은 대가 지급기준이 아닌, 상한액 기준임
2시간 초과 ~ 3시간 이하	25만원	
3시간 초과 ~ 4시간 이하	30만원	
- 회의시간은 1일 총 4시간 이내에 한하며, 다만, 회의목적상 이를 초과해야 할 경우 제4조 2항에 따라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원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 - 타 시·도에서 위원회에 참석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여 최대 100,000원까지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교통비·식비·숙박비는 실비 범위 안에서 별도 지급 가능 - 공무원에 대해서는 자기 소관사무 이외의 업무로 참석하였을 때에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 - 화상회의 등 사이버 회의 시 상기의 기준을 적용한 참석수당은 지급하되, 교통비 등은 미지급		

※ 광주, 전남을 제외한 타 시·도로 부터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 TP 내부규정에 따라
교통비 등 실비 지급 가능(해당시 문의)

예) 2시간 이상 진행되는 회의에 참석한 A위원(서울)의 위원수당

산출내역		집행금액	비 고
회의참석(2시간 이하)	타 시·도		
200,000원	(서울)100,000원	300,000원	교통비 지출 증빙시 내부 규정에 따라 실비 지급 가능

나. 시간 산출 (개정 2015.10.08.)

- 1시간 이하 : 1시간
- 1시간 초과 ~ 2시간 이하 : 2시간
- 2시간 초과 ~ 3시간 이하 : 3시간
- 3시간 초과 ~ 4시간 이하 : 4시간으로 산출

□ 국내 여비 정액표

(단위 : 원)

구분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임	숙박비 (1야당)
제3호	2등급 (일반실)	2등 정액	Economy급 (정액)	정액	실비 ◦ 상한액 - 서울특별시: 70,000 - 광역시: 60,000 - 그밖의 지역: 50,000

□ 구비서류 참고사항

국내여비(여비교통비)	구비서류(필수)	산정금액
관내출장(4시간 미만)	관내출장신청서 (일괄 지출 가능)	회당 10,000원
관내출장(4시간 이상)	관내출장신청서 (일괄 지출 가능)	회당 20,000원
관외출장(8시간 기준)	출장신청서 출장결과보고서 출장증빙서류(실비처리)	일비, 식비 별도 포함없음 ※ 주차는 해당없음 미포함
공통서류	출장자 입금증	

□ 기타사항

- 온라인 회의의 경우 참석자 전원이 얼굴이 보이도록 화면 캡처 후 결과보고서(컨설팅 일지)에 첨부하며 참석자 서명록 및 위원 수당 지급 서명록은 스캔을 받아 일괄정리
- 교통비 증빙서류(자차 이용시 통행료 왕복 영수증, KTX 영수증, 탑승권 결재 영수증 등)
- 수당지급 불가대상(광주테크노파크, 수혜기업 등 관련 인력)
- 소득세·주민세 등 광주TP에서 지급시 일괄처리

□ 자동차 운임 계산방법 참고

거리산출(네이버지도 등 거리산출)

대중교통 **자동차** 도보 자전거

광주테크노파크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

다시입력 + 경로지 **입력하기 >**

추천 이륜차우선

2시간 2분 추천 175.8km
 동행료 8,100원 · 주유비 22,272원 · 택시비 178,260원
 ● 고창담양고속도로 12.9km →
 ● 호남고속도로 94.7km → ● 호남고속도로지선 46.1km
[상세보기 >](#)

2시간 4분 거리우선 175.5km
 동행료 8,100원 · 주유비 22,237원 · 택시비 177,890원
 ● 호남고속도로 107.1km →
 ● 호남고속도로지선 46.1km →
 ● 당진영덕고속도로(대전-당진) 7.9km
[상세보기 >](#)

2시간 1분 시간우선 178.4km
 동행료 9,500원 · 주유비 22,599원 · 택시비 180,730원
 ● 고창담양고속도로 12.9km →
 ● 호남고속도로 94.7km → ● 호남고속도로지선 47.6km
[상세보기 >](#)

2. 유가정보(당일 해당지역 유가정보)_오피넷

[싼 주유소찾기](#)
[국내유가통계](#)
[유가관련정보](#)
[불법행위공표](#)
[이용안내](#)
[로그인](#)
[회원가입](#)

평균판매가격 지역별 주유소 평균 판매가격(부가세포함)

제품별
지역별
상표별
형태별
지역상표별

구분 ☒ 일간 ☐ 주간 ☐ 월간 ☐ 분기 ☐ 연간

기간 2020년 9월 9일 ~ 2020년 9월 10일

지역 ☒ 전제선택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세종

제품 ☒ 전제선택 ☒ 고급휘발유 ☒ 보통휘발유 ☒ 자동차용경유 ☒ 실내등유 ☐ 보일러등유

[조회](#)

2020년 09월 10일 (원/리터) 최고값 최저값

[차트보기](#)
[회원인쇄](#)
[엑셀저장](#)
[CSV저장](#)

구분	고급휘발유	보통휘발유	자동차용경유	실내등유
광주	1,559.42	1,335.51	1,139.23	921.68
광선구	1,572.55	1,339.39	1,142.46	894.56
남구	1,569.71	1,318.65	1,118.94	920.00
동구	1,572.67	1,345.20	1,147.20	966.67
북구	1,521.88	1,340.57	1,146.59	971.74
서구	1,570.50	1,326.34	1,131.12	923.37

3. 출장증빙영수증(톨게이트)-실비계산

톨게이트 영수증 첨부

4. 운임산출

(175.8km × 2 + 20km) ÷ 8L/Km × 1,335원/L + 톨비 = 62,010원

(거리산출*왕복+20km) ÷ 연비(8L/Km_고정) × 당일 해당시 유가금액 + 톨비(실비) - 운임비